#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

제정 2002. 9. 4. 규칙 제388호 개정 2005.10.10. 규칙 제462호

2007. 2. 28. 규칙 제485호

2012. 3. 12. 규칙 제592호

2012. 3. 28. 규칙 제596호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전임교원 의 교육·연구·봉사활동영역의 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과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고 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(이하 "전임교원" 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## 제2장 교수업적평가위원회

- 제3조(설치)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업적을 심사·평가하기 위하여 교수업 적평가위원회 (이하 "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4조(구성)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, 위원은 훈련처장, 기획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④ 평가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- 제5조(기능)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평가한다.
  - 1. 전임교원업적에 관한 사항
  - 2. 관련규정의 제 · 개정에 관한 사항
  - 3. 기타 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- 제6조(회의소집 및 의결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# 제3장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

- 제7조(평가영역) 평가는 교육활동영역·연구활동영역(연구업적·전문실기 경기력)·봉사활동영역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**제8조(평가대상)** ① 평가대상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되, 임용기간 이 6월 미만인 전임교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.
  - ② 제1항에 의거 평가되지 아니한 업적에 대하여는 최초 평가 시 재임 중 업적에 대하여서만 심의·평가하되, 영역별 평가점수에 대하여는 아래 최초평가점수 평가방법과 같이 평가하여 연간 업적으로 인정한다.
    - ▲ 최초평가점수 = (산출점수÷12월) × 평가된 기간(월)
- 제9조(평가시기) 업적평가는 전임교원의 직전학년도의 업적에 대하여 매학년도 1학기 중에 실시한다.
- 제10조(평가기간) ① 전임교원의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매 학년도(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)를 기준으로 하며, 최근 3년간의 영역별 총점을 평균하여 당해 학년도의 업적으로 한다.
  - ② 평가기간 중 안식년·파견·연구교수·휴직·직위해제·정직 등의 기간이 1학기를 초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당해 사유가 만료된 후 최초로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해당기간 의 평가서를 제출하여 심의·평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③ 제2항의 사유 중 심의·평가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의거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 연도별 평가점수의 인정은 제8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.
- 제11조(평가대상 교원의 구분) 평가는 이론분야 교원과 전문실기분야 교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제12조(영역별 배점) ① 전임교원 업적은 1년 단위로 교육활동·연구활 동·봉사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며,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교육활동 : 40점
  - 2. 연구활동 : 50점+ α
  - 3. 봉사활동 : 10점
  -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실적은 특별가점으로 평가하여 총점에 가산한다.
- 제13조(신청서 제출) 업적평가 신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구분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교육활동영역 평가

- 제14조(평가항목 및 배점) 교육활동영역의 평가는 학생지도 및 강의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.
- 제15조(평점 평가방법) ① 교육활동영역의 평점은 학생지도 및 강의에 대한 실적을 학기별로 평가하며 1년간의 실적을 평균하여 평점을 산출하되,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영역을 평가한다.

- 1. 기간이 1학기 미만인 경우, 해당학기의 업적을 해당학년도 업적으로 한다.
- 2. 기간이 1학년도 이상인 경우, 직전학년도의 평가점수를 해당학년도 업적으로 한다.

#### 제5장 연구활동영역 평가

#### 제1절 이론분야 교원

- 제16조(평가항목 및 배점) 이론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논문, 저서, 연구보고서, 학술회의 활동, 수상·특허 및 자격증, 교외연구비, 공연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하며,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.
- 제17조(평점 평가방법)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영역의 평점은 별표 2에 의하여 연구 업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되, 이 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.
  - ② 연구활동영역의 평점은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을 평균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하며, 평가위원회의 심의 · 평가를 거쳐야 한다.
  - ③ 논문이나 저서의 공동집필의 경우 각각 해당 항목별 평점에서 2인 70%, 3인 50%, 4인 30%, 5인 이상 10인까지 20%, 11인 이상 20인까지 10%를 인정하며 공동연구의 책임자는 10%의 가산점을 부여한다.
- 제18조(논문) ① 논문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분야별로 전문학술지를 등급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선정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상이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회의 주제로 발표하였을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
  - ③ 국내학술지에 게재되어 평가를 받은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번역 게재된 경우 그 시점에서 등급차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한다.
  - ④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의 등급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국제전문학술지는 SCI(Science Citation Index, SCI Expanded포함), SSCI(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), A&HCI(Art & Humanities Citation Index)에 등재된 국제적학술지를 말한다.
- 2. 국제학술지는 SCI·SSCI·A&HCI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국외의 전 국규모학술단체에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며, 논문의 게재 심사제도가 엄격한 학술지를 말한다.
- 3. 기타 외국학술지는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않는 국외의 학술지를 말한다.
- 4. 국내전문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(후보)된 학술지를 말한다. 박사학위논문은 내용의 일부를 공인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 여 인정하지 않는다.
- 5. 기타 국내학술지는 국내 전문학술지 기준에는 못 미치나 전국규모의 학술 단체에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전문학술지 또는 대 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논문집을 말한다.
- 6. 종합학술지에의 논평·서평은 일반출판사나 기타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전문분야의 종합 학술지에의 논평·서평을 말한다.

# 제19조(저서) 저서의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국제전공학술저서는 국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(자비출판 제외)를 말한다. 국내 출판저서가 우수성이 인정되어 외국출판사에서 출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등급차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한다.
- 2. 국내전공학술저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와 대학에 서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대학교재(가상강의를 위한 대학교재 포 함)를 말한다.
- 3. 전공분야 번역서는 전공 관련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.
- 4. 편저는 여러 사람의 논문 및 이론들을 모아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.
- 5. 저서의 개정판은 이미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모아 삼분의 일 이상 개정하여 출간한 사실이 인정된 서적을 말한다.

- 6. 일반서적은 국제전공학술저서, 국내전공학술저서, 전공분야 대학교재, 편저이외의 저서를 말한다. 다만, 이미 업적으로 평가받은 논문 등의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20조(연구보고서) ① 연구보고서는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말한다.
  - ② 연구보고서의 평가항목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정부기관보고서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전공관련보고서와 교육인 적자원부, 한국학술진흥재단, 과학재단, 정부부처 등의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를 말한다. 단, 공인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 구과제의 보고서는 제외하고,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논문으로 발행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
  - 2.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는 연구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요청 에 의한 전공관련보고서와 학술단체, 기업체 등의 연구과제 결과보고 서를 말한다.
  - 3. 기타 보고서는 국내외 활동 중 특별한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된 보고서를 말한다.
- 제21조(학술회의활동) ① 국제·국내 학술회의에서의 논문발표는 평가대 상의 실적물이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. 또한 좌장·토론 자는 평가대상자의 역할이 프로그램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
  - ② 학술회의활동의 평가항목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국제전문학술회의는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국제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.
  - 2. 국제학술회의는 국내·외에서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.
  - 3. 국내전문학술회의는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국내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.
  - 4. 국내학술회의는 제3호의 국내전문학술회의 이외의 학술회의를 말한다.

- 제22조(수상·특허 및 자격증) ① 국가포상 및 국제학술단체상은 전공분 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로 인하여 국가 및 국제학술단체로부터 수 여된 상을 말한다.
  - ② 국내·외 학회 및 학술단체상은 국내·외의 공인된 학회 및 학술단 체로부터 학술업적을 인정받아 수여된 상을 말한다.
  - ③ 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는 특허를 출원하여 국내·외에서 특허권이 최 종적으로 인증된 것을 말한다.
  - ④ 국제심판증은 공인된 것으로 평가년도에 취득한 것을 말한다.
- 제23조(교외연구비) ① 교외연구비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당해연도에 연구교수 몫으로 학교에 입금된 연구비 총액을 말한다.
  - ②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출 방법은 연구책임자는 총연구비 ×[1÷(n+1)]×2, 공동연구자는 총연구비×[1÷(n+1)]로 산출한다 (n은 총연구자 수).
  - ③ 교외연구비에 대한 배점기준은 연구비수혜 계약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, 다년간 연구과제인 경우 수혜연구비를 연도별로 분할하여 인정한다.
- 제24조(공연) 공연은 국제개인공연 안무 및 출연, 국내 공연 및 연출, 공인 된 국제공연참가 및 공인된 국내 공연에 참가한 것을 말하며,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.
- 제25조(연구업적) 연구업적물의 발행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인정받지 못한 연구업적 실적은 다음연도의 업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## 제2절 전문실기분야 교원

제26조(평가항목 및 배점) ① 전문실기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경기지도실적과 연구활동실적으로 평가한다.

- ② 경기지도실적 평가는 해당종목의 국제대회 경기실적과 국내대회 경기실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(별표 3)과 같다.
- ③ 연구활동실적 평가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논문, 저서, 연구보고서, 학술회의 활동, 수상·특허 및 자격증, 교외연구비에 대한 실적을 토대 로 실시하고,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(별표 2)와 같다.
- 제27조(평점 평가방법)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실기 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업적은 (별표 2)와 (별표 3)에 의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며, 업적 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.
  - ② 전문실기 연구활동 영역의 업적평점은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을 평균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한다.
  - ③ 전문실기 경기실적 평가인정기간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주요국제대회(올림픽, 세계선수권대회, 아시아대회, 유니버시아드대회) 경기실적은 다음 대회 개최 전년도까지의 연구활동영역 업적으로 인 정한다.
  - 2. 국제대회(주요 국제대회를 제외한 해당 협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참 가한 국제대회)와 국내대회의 경기실적은 해당년도의 연구실적으로만 인정한다.
  - 3. 국내대회 경기실적은 업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최소 4개이상의 국내대회 1위 입상점유율에 따라 7단계의 등급에 의한 배점을 기준으로 한다.

## 제6장 봉사활동영역 평가

- 제28조(평가항목 및 배점) 봉사활동영역의 평가는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.
- 제29조(평점 평가방법) ① 봉사활동영역의 평점은 1년간의 실적을 평점으로 산출하고, 산출된 봉사활동영역의 평균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② 1개학년도 이상의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수의 경우 직전학년도의 평점결과를 적용한다.

#### 제7장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

- 제30조(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) ① 매년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에 게 통보하여야하고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업적평가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한다.
- 제31조(업적평가재심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) ① 업적평가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 업적평가재심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조교수 이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이의신청자의 동일분야의 교수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, 필요시 타 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2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  - ③ 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가 송부되면 이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④ 재심사 결과에도 승복할 수가 없는 해당교원은 2차로 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⑤ 평가위원회는 2차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, 대학인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결과가 송부되면 해당교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8장 평가결과의 활용 등

- 제32조(활용의 범위) ① 평가결과의 활용범위는 성과급 지급, 승진임용, 재임용, 재계약임용, 정년보장, 우수교원의 선정·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 상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평가자료를 제1항의 범위외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.

- 제33조(활용방법) ① 성과급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직전학년도의 1년간 의 개인별 업적평점 백분율에 의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승진임용, 정년보장임용, 재임용 및 재계약임용 대상자는 최근 3년간의 업적 평균평점(해외연수, 휴직 등 업적평가실적이 없는 기간은 제외)이 120점(연구전담교원은 170점)이상이어야 한다. 단, 전문실기 교원은(별표 2)의 연구활동 영역 평가점수가 20점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③ 우수교원의 선정·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직전학년도 의 개인별 업적 평점 백분율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34조(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) ①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외에는 비공 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에 의한 관련 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.
  - ②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평가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제35조(보상 및 지원) ① 평가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교원의 평가순위를 결정하여 우수교원을 총장에게 추천한다.
  - ② 업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추천된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비지급, 국 내·외 연구교수의 기회, 책임시수 단축 등 교육·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3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관한 보고 서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 부 칙(제388호, 2002. 9. 4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(활용의범위)의 성과급의 지급은 2003학년도부터 적용하되, 2003학년도에는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하여 활용한다.

- ② (승진임용, 재임용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 반영시기)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 (계약제 임용교원제외)의 승진임용, 재임용에 대한 업적 평가 결과의 반영은 2년간의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전문실기분야 교원의 연구활동영역의 선택 시행시기) 이 규정 시행당시 전문실기분야 교원으로 재직중인 교원(계약제 임용교원 제외)의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2004년 8월 31까지 한하여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평가를 받거나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으며, 그선택은 평가대상자가 정한다.

## 부 칙(제462호, 2005.10.1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제485호, 2007. 2.28.)

-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최초 승진 및 재(계약)임용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 부 칙(제592호, 2012. 3.1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제596호, 2012. 3.1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전임교원 업적평가 신청서

 $(20 . 3. 1 \sim 20 . 2. 28)$ 

		한글 :	직 1	그. 크		
성	명	한문 :			전공·교양·교직/ 전	
		영문 :	_ 분 c	ì	문실기	
소	속	학(부)과				
보임	교 용 일		현직급 임용일			
전공분야			세부전공			

한국체육대학교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에 의거 업적목록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고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 직위 직급 성 명: (서명) 확인자 직위 직급 성 명: (서명)

붙임: 1. 업적평가목록 1부

2. 증빙자료 각 1부

#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

# 교육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

구분	평 가 항 목	최고 배점	배 점 기 준 (※전문실기분야교원만 해당)
학생	- 학생지도실적 ① 학부지도교수 ② 행사(동아리포함)지도 ③ 봉사활동 지도 ④ 교육실습 지도 ⑤ 학생상담 지도 ⑥ 졸업생 추수 지도 ⑦ 야외교육 지도	10	평가항목 중 - 4종류이상의 활동에 참여 10점 - 3종류의 활동에 참여 8점 - 2종류의 활동에 참여 6점 - 1종류이하의 활동에 참여 4점
지도	※국가대표(후보선수)	10	-국가대표 1명당 2점(1개월이상 국가대표) -국가대표후보선수 1명당 0.4점(1개월이 상)
	※학생중도탈락(퇴학·자퇴)		학생1인에 0.2점 감점
	석·박사 배출 실적	5	석사2명이상 또는 박사1명 배출 5점 석사1명 배출 3점
	소 계	25	
	강의 시간수(학부+대학원)	15	<ul> <li>책임시수 강의 12점</li> <li>책임시수 초과 강의 1시간당 1점가산</li> <li>단, 3시간 초과강의까지</li> <li>책임시수보다 부족시 1시간당 1점 감점</li> </ul>
	강의계획서제출 (학부+대학원)	5	- 전 강좌의 강의계획서 제출 5점 - 최초기한내 미제출 1교과목당 1점 감점 - 강의계획서 미제출 0점
강	강의평가	10	<ul> <li>· 평점 3.5점 이상 - 10점</li> <li>· 평점 3.0 - 3.4 - 8점</li> <li>· 평점 2.5 - 2.9 - 6점</li> <li>· 평점 2.5 미만 - 5점</li> </ul>
의	휴강 및 보강 여부	5	- 휴강이 없거나 휴강후 보강실시 5점 - 결강시 시간당 -0.5점
	성적평가의 정확성	5	- 성적정정이 없거나 정정기간내 정정 5점 - 정정기간 경과 후 정정 1명당 0.5점 감 점
	신교육 기법 개발 및 운용 ① 새교재 개발 ② 강의시 다양한 보조자료 이용 ③ 사이버강의 실시 ④ 교수 개인 홈페이지 관리	10	평가항목 중 - 2종류 이상 해당시 10점 - 1종류 해당시 5점
	소 계	50	
	합 계 	75	

# 이론분야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

구 분	평 가 항 목	배 점
	국제전문학술지	100
	국제학술지, <b>박사학위논문</b>	<u>60</u>
	기타외국학술지	40
논 문	국내전문학술지	50
	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	40
	기타 국내학술지	20
	종합학술지에의 논평·서평	10
	국제전공학술저서	50
	국내전공학술저서(대학교재 포함)	40
저 서	전공분야 번역서	30
	전 전서의 개정판	10
	일반서적	10
	글린시역   정부기관보고서	30
연구보고서	성무기원모고시  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	18
	기타보고서	12
	국제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	30
	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	15
학술회의	국내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	10
활 동	국내학술회의 논문발표	8
	국제전문학술회의·국제학술회의 좌장 및 토론자	5
	국내전문학술회의·국내학술회의 좌장 및 토론자	2
	국가포상(훈·포장)	50
	국제학술·체육단체 수상	10
수상·특허	국내 학회 및 학술단체·중앙 체육단체 수상	5
및 자격증	국제특허	50
7 71 7 0	국내특허	30
	실용신안특허	20
	국제심판자격증 취득(당해년도)	10
	500만원 미만	25
교 외	500만원-1000만원 미만	30
1	1,000만원-1,500만원 미만	35
연구비	1,500만원-2,000만원 미만 2,000만원-3,000만원 미만	40 45
	3,000만원 이상	50
	국제공연 안무 및 출연	20
الم <del>بر</del>	국내공연 출연(연출), 시범공연발표	15
공 연	공인된 국제공연 참가	8
	공인된 국내공연 참가	5

[별표 3]

# 전문실기분야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(I)

구분	평 가 항 목			.위 메달)	2위 (은메달)		3위 (동메달)		국가대표 참가인원 (1인점수/ 최고10점인정)	
	올림픽			100점 70점		40점			5점	
	세계선수권대회			70점		50점		30점		3점
국	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			40점 30점		20점			2점	
제 대	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(쥬니어대회)		2	0점	15점		10점		1점	
회	아시아청소년(쥬니어대회) 동아시아대회		15점		10점		5점		0.5점	
	대한체육회인정국제대 회(협회에서예산지원)	메이저급	2	0점	15점		10점		1점	
		비메이저급	1	5점	10점		5점		(	).5점
	대한체육회 인정 국내대회 중			2 등급	3 등급	4 등급	5 등	6 등급	7 등	비고
국	선발전, 대학대회, 일반대회의 1위 경기실적 중 4개 대회의 실적	40점	35점	30점	25점	20점	15점	0점		
내 대 회	(본인이 선택)		50% 이상	49 -40%	39 -30 %	29 -20%	19 -10 %	9 -1%	실적 없음	1위의 비율
	한국신기록 이상		1종목에 5점 가산점 부여 (1년에 2회 이상 불인정)							

- \* 대한체육회 인정 국제대회의 메이저급 대회와 비메이저급 대회는 본인이 신청하되 경기력향상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정한다.
- \* 국내대회의 경기실적은 각 종목에서 당해년도에 참가한 모든 대회의 세부종목별 경기참가와 참가한 세부종목의 경기실적을 "국내대회 경기실적 평가 신청서"에 작성하여 제출하고, 제출된 경기실적 대회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으며, 평가방법은 대회에 참가한 세부종목별 1위 경기실적의 점유비율에 따라 해당점수를 받는다. (인정하는 대회는 대한체육회에 승인된 선발전·대학전·일반대회 모두를 포함한다)

# 봉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

구분	평 가 항 목	건별 평점	배점기준			
	보직교원	5	<ul><li>책임시수 6시간 이하 5점</li><li>책임시수 9시간 이하 3점</li><li>기타보직 2점</li></ul>			
	각종 위원회 위원	1	연간 2개 위원회 2점까지 인정			
교	동아리 지도교수	1	연간 2개 동아리 2점까지 인정			
	교수연수	5	교수연수 참가 5점			
내	각종교내 행사 참여	1	교수회의, 입학식, 졸업식행사 참여 1회 당 1점			
	분야별 전담교수	2	전문실기지도 겸임교수 대학원 주임교수			
	조조훈련 및 동하계 방학기간 중 강화훈련	5	30일 2.5점			
	교내특강	1	연간2회 2점까지 인정			
	국가기관의 정책자문·심의위원	2	위원 및 임원으로 선임된 후 학교의			
	국제학술·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	2	승인을 받아 평가기간 중 6개월 이상 재 임한 것에 한하여 건당 해당평점을 부여			
	국내학술·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	1	한다.			
亚	기업체·기타 저명한 사회 단체 자문위원 및 임원	0.5	연간 2건에 1점까지 인정			
	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	0.5	연간 4건에 2점까지 인정			
외	학술강연	1	전공과 관련한 강연으로 연간 2회 2점까지 인정			
	교외봉사활동 및 기타	1	사회복지단체 등 봉사활동			
	주요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	5				
	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	3	연간 2회 6점까지 인정			

# [별표 5]

# 특별가점 평가항목 및 배점

# □ 전문실기

구 분	평가항목	최고배점	배점기준	배 점 방 법
특별가점	학생취업실적	200점	취업자율	(취업자수/졸업생수)*200

#### □ 이론분야

구 분	평가항목	최고배점	배점기준	배 점 방 법
특별가점	학생취업실적	없음	취업자수	1인당 10점(2인이상 추가 시 6점씩 추가배점)